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합의결과서

아래 공사 시행에 있어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1. 공사내용	
공사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역세권 활성화 사업
공사 장소(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363 - 10
공사의 종류	공동주택 (V) 건축물() 도시철도()
2. 건축주 제공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사항	
옥외안테나 설치장소	해당없음
중계장치 설치장소	1. 지하2층 : 헬룸 2. 지하6층 : 헬룸
접지단자 위치	각 층의 중계장치 등으로부터 최단거리
전원단자 위치와 용량	각 층의 중계장치 등으로부터 최단거리 (총용량4kW 이상, 교류 220V, 단자 3개 이상)
3. 공동주택(500세대 이상)에 대한 사업주체의 합의결과 게시 방법	
중계장치의 설치 위치 공개방법	해당없음
청약신청 접수 예정일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제4항에 의거,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주체는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합의 결과에 따른 중계장치의 설치 위치를 공개해야 함.	
4.공사와 관련한 정보의 제공	① 인허가서 및 사업계획(변경)승인서 사본 1부 제공 ② 착공설계 신청 전 설계도면 확인에 관한 사항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및 중계설비) ③ 건축물의 착공/준공일정 및 구내용 이동통신 중계설비의 설치 등 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
5.기타 합의사항	"상세 합의 결과" 참조

※ 건축주는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의 제 35조~39조를 준수하여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 준공 이전에 이동통신 안테나, 중계장치 등 중계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첨부] 구내용 이동통신 중계장치 및 옥외안테나 설계도면 1부.

상기 합의내용 이외의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할 것을 상호 합의하였음.

2025년 09월 12일

구분	법인/단체명(상호)	대표자(성명)
건축주	장승배기역지역주택조합	황병우
대리인	(주)유원이앤씨	김승환 (인동의합)

기간통신사업자 합의대표

RAPA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
한국전파진흥협회



상세 협의 결과

1. 옥외안테나 설치 위치

해당없음

2. 중계장치 설치 위치

1. 지하2층 : 헬룸
2. 지하6층 : 헬룸

3. 기타 협의사항

- 상호 협의결과서 제4항 공사와 관련한 정보의 제공
- 건축주등* 필수 보완사항 (홈페이지 "착공통보" 화면에 등록)

- ① 인허가 및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1부
- ② 정보통신 착공도면 1부
- ③ 착공예정일
- ④ 준공예정일
- ⑤ 공사요청일
- ⑥ 공사현장담당자 (이름, 연락처 등)

*건축주등 : 건축주 외 건축사, 건설사, 통신설계사, 시행사, 시공사 등 건축주의 위임을 받아 협의를 대표한 자

- 중계설비 설치시기 : 건축주 공사요청일 ~ 건축물 준공검사 이전에 설치를 하여야 함

※ 착공 후 준공예정일을 입력하지 않거나 준공에 임박하여 입력하는 경우, 이동통신사 중계설비의 공사물자 확보(최소5개월 소요)가 불가하여 공사가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아래 <<주의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인 경우는 상호협의결과서 내 이동통신 중계장치 설치 위치와 도면 상의 위치가 일치하는 지 확인 후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의 설치위치 공개 방법의 예시"를 참고하여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통신설비 설계도서가 시공사(건설사)에게 반드시 전달 되어, 건축물에 선로설비가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 공동주택 옥상에 중계장치/옥외안테나 설치 시, 전원접지단자를 옥상에 설치하여야 합니다.